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인원*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연혁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채무자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의 최대한족과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라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왔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 제약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채권자의 절차 관여 문제는 도산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함)도 채권자협의회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생제도는 일명 법정관리라는 이름 하에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혁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 전후 급증한 기업 도산사건의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워크아웃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단 자율협약이라는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를 인정해왔는데 이들 제도와 비교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 역할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관리인에 대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한 반면,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위 협의회의 권한이 법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절차 내 의견제시 등 소극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도산법과 비교할 때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의 힘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바,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실질적 반영 및 제3자 공동관리인 선임의 검토, 회생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필수적인 반영, 부실 경영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활성화, 회생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협의회의 이행가능성 점검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해 본다.

상기 제안의 실현을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기업회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현행 워크아웃제도와와의 통합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회생, 채권자협의회, 관리인, 자율협약, 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 도산법, 갱생

* 한국수출입은행 사내변호사/선임심사역(iwkang@koreaexim.go.kr)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현행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
 - 1.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중요성
 - 2.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
 - 3.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
 - 4. 소결
- III. 타 기업구조조정 절차 내 채권자 지위와의 비교 검토
 - 1.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관
 - 2.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기능/역할과의 비교 검토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자협의회 기능/역할과의 비교 검토
 - 4. 소결
- IV.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회생절차 내 채권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 1.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 2. 미국
 - 3. 독일
 - 4. 일본
 - 5. 영국
 - 6. 프랑스
 - 7. 소결
- V.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향
 - 1.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역할 강화의 필요성
 - 2.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개선방향
- VI. 결론

I. 들어가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

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동 법률 제1조 전단 참조). 이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제도와 대비할 때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공평한 변제보다는 채무자의 회생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동 법률 제1조 후단 참조).

연혁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의 최대만족과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 주주의 권리회복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왔다. 이 중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행사 등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의 절차 관여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여야 하는가는 도산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함)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회생절차 내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혁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증한 기업 도산사건의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 8. 14 제정된 제1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워크아웃이라는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를 인정해 왔는데¹⁾, 이들 워크아웃 등과 비교할 때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제도는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남아 있다.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할 때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및 제도적 이유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법원의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아직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 회사정리법상 제3자 관리인 제도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원칙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로 대비되는 회생절차 내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 간의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채권자의 절차 관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다시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제도와 법정 외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의 병존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1) 김장훈,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 기업회생사건의 최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6권제2호, 한국법학원, 2015, 452-453쪽 참조

이하에서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채택과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워크아웃 제도에서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요 선진국의 기업회생절차 상 채권자의 지위 및 역할과 비교 검토해 본 뒤, 향후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채택과의 역학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

1.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중요성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 내의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관리인 제도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되는데, 이는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여진다²⁾. 채무자회생법으로의 통합 이전에는 회사정리법상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됨이 원칙이었는데, 기존 대표자가 기업경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 것이었다³⁾.

어찌되었든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존 경영자는 적어도 회생절차 내에서는 기존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모든 절차 관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 조율해야 하는 공적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는다(채무자회생법 82조)^{4) 5) 6)}.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동일한 기존 경영자에게 법적 지위의 변화만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

2) 김장훈, 앞의 글, 453-454쪽 참조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3판)」, 박영사, 2011, 194쪽 참조

4) 이점인,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621쪽 참조

5)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등 다수)도 구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을 정리회사의 기관이나 그 대표자가 아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 보고 있다.

6) 관리인이 회생절차 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① 사업경영권의 행사(법 제56조), ②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법 제78조), ③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법 제90조 내지 94조), ④ 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법 147조), ⑤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법 220조), ⑥ 채권자들과의 협상, 회생계획의 수행(법 257조), ⑦ 부인권의 행사 등이다. 이상 유해용,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39쪽 참조

기 때문에⁷⁾,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은 회생기업의 관리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 및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지정한다(채무자회생법 61조, 81조, 8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⁸⁾,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 내에서도 경영권 확보 등 사익추구를 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데,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위와 같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반대로 채권자의 역할이 미미하면 법원이 도산절차를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법원이 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⁹⁾.

그렇다면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현행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채권자에게 상반되는 이해관계자로서의 기능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¹⁰⁾가 문제된다.

2.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주요 내용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채권자협의회 구성은 필수적인데 모든 채권자가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인 이내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다(채무자 회생법 제20조 참조).

이렇게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회생절차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1호),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2호),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3호),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4호), 그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5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6호)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참조).

7) 김주하,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개선방안”, 201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8. 3., 45쪽.

8) 김장훈, 앞의 글, 458쪽 참조

9) 김재형, “도산법제의 재검토 -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50권제2호, 법조협회, 2001. 2., 149쪽 참조

10)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채권자협의회는 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의견으로는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12., 22쪽 참조 등

또한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1호), 법원 앞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제공¹¹⁾(2호), 관리인·조사위원 등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3호), 회생계획 인가 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의견 제시(4호), 조사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의견 제시(5호),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²⁾(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44조 참조).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상기 의견제시 등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비용 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이들 채권자협의회의 회생절차 내 참여 행위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자들 중 출석 채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협의회 절차 관여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로 요약되고, 법원이나 관리위원회는 위 채권자협의회 의견제시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38조). 그러나 채권자협의회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의견을 참고할 뿐이며 해당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¹³⁾. 이 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참여에 대한 동기 내지 유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채무자 기업 내지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가중되는 양상이다.

3.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

종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제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으로 분산되어 있다가 2005. 3. 31자로 채무자 회생법으로 통합되었는데, 채무자 회생법 이전에도 채권자협의회란 제도는 존재하였다. 물론 통합도산법 제정 전에는 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없었으나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및 화의법상 화의절차 내에서는

11)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40조(채권자협의회 자료제공청구) ①항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 등에게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채권자협의회의 운용 제3조(의견제시)에서도 채권자협의회 권한으로서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13) 안정상,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0쪽 참조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¹⁴⁾.

상술하면 구 회사정리법(법률 제6627호, 2002. 7. 1자 시행)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동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었고, 담보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과반이어야 했다(동법 제 173조의2). 동 협의회는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법원에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동법 제173조의3),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나 관리인은 정리절차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동법 제173조의4).

구 화의법(법률 제6627호, 2002. 7. 1자 시행) 역시 화의절차가 개시되면 영업자인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동 협의회 역시 10인 이내의 채권자로 구성되었다(동법 제49조의2). 위 협의회는 구 회사정리법상 채권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법원에 화의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동법 제49조의3 제1항),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는 화의조건의 원활한 이행여부 평가 및 이행상황의 판단을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고(동법 제49조의3 제2항), 법원이나 채무자는 화의절차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동법 제49조의4).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채권자협의회가 파산절차를 포함한 도산절차 전반에 인정되었고, 채권자협의회가 감사를 추천하고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및 비용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21조 1항 4호) 채권자협의회 기능 및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처럼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관리인을 효과적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¹⁵⁾¹⁶⁾.

4. 소결

상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구 회사정리법상 제3자 관리인 제도 대신 기존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436호), 2005. 2자, 5쪽 참조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436호), 2005. 2자, 6쪽 참조

16)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법」 제18호, 사법발전재단, 2011. 12., 18쪽 참조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의도함과 동시에 채권자 협의회 제도의 개선 및 역할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채무자회생법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역할이 워크아웃 절차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사적자율협약을 포함하는 광의의 워크아웃 절차 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Ⅲ. 타 기업구조조정 절차 내 채권자 지위와의 비교 검토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1.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상술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 외에도 일명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제도로 나뉘어 있다. 워크아웃은 1998년 외환위기 무렵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근거로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기업이 자율협약에 의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소위 런던방식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¹⁷⁾.

이들 절차는 광의의 워크아웃으로 불리는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내 채권자의 지위 및 역할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 이들 워크아웃 절차 내에서의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기능/역할과의 비교 검토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통상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17)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 「기업구조조정관련 질의응답 모음」, 2010. 12., 3쪽 참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법정외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하면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의 결정, 기업회생절차 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시 그 작성 및 제출, 채권행사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등 점검평가 및 조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계획의 수립, 공동관리절차 중단 또는 종결에 대한 검토 등을 한다(위 운영협약 제14조 참조).

상기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광범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통상 외부 회계법인이 선임되어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예상 채권회수율의 비교,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예측을 통한 추정 재무제표 및 손익 산출을 하는데, 해당 결과치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 및 언제까지 지속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대표하는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특별약정 또는 MOU라고 한다(위 운영협약 제24조 참조). 위 특별약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속칭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 주요 자산의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 계획을 이행하는 약정을 맺는 것이다. 해당 약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자구계획 이행 실적을 매분기, 반기 또는 매년 등 일정 주기를 정하여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으며, 해당 평가내역은 이후의 구조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된다(위 운영협약 제25조 참조).

이를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그 개시 및 지속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파산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회생개시신청 직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일률적으로 정지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나 관리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토대로 자구계획을 점검받는 등의 절차는 없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예상 채권회수율의 비교, 자금수지계획표 등의 작성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이 기업회생절차 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는데 조사위원은 해당기업의 실사 후 결과치를 법원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 주도 하에 채무재조정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채무재조정안은 기본적으로 주주는 물론이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감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각 채권자들의 채권 중 현금변제비율을 정하고 해당 현금변제부분을 어떻게 분할하여 변제할 것인지, 각 채권자의 담보권은 어떻게 평가되어 회생담보권으로 반영되는지, 현금변제 이외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감축당하는 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안의 마련 과정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상술하면, 우선 채권자협의회 자체가 채권액 기준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수 채권자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고, 채권자협의회가 모든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채권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협의회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의 역할을 염두에 둔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채권자협의회에 각종 절차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채권자들도 다수결 등 의결절차를 거쳐 반드시 하나의 의견을 낼 필요도 없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기준으로 3/4 이상, 회생채권자 기준으로 2/3 이상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관리인 입장에서 소수 채권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할 유인이 거의 없다. 한편,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자율협약과 달리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공평과 형평의 원칙이 강조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18조 참조), 영업관계의 지속 및 신뢰와 직결되는 상거래채권자에 대하여는 일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거나 인가 전 변제허가를 통한 우선변제 외에 다른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제218조 제1항 제3호 등 참조). 특히 상거래채권자는 금융채권자와 달리 소액다수의 채권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총합하여 모두 반영하기도 어렵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자협의회 기능/역할과의 비교 검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 8. 14자 1차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한시법으로서 일몰 및 재입법을 반복해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금융채권자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변천을 거쳤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8. 10. 26자로 재입법되었는데 해당 법률안에서는 동법의 상시화 방안 관련 연구를 명

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¹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발생시 구성되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역시 그 기능과 역할은 채권은행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와 유사하다. 따라서 회생 절차 내 채권자협의회와의 비교검토 또한 위 2.에서 본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신용위험 상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 발생 시 구성되는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연장, 중단 및 종료(1호),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장 및 중단(2호),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4호), 기업개선계획을 담은 약정의 체결(5호),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6호),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7호),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8호) 등을 의결한다(동법 23조).

금융채권자협의회 의의사결정을 위해 역시 외부 회계법인이 선임되어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예상 채권회수율의 비교,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예측을 통한 추정 재무제표 및 손익 산출을 하는데, 해당 결과치를 바탕으로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체결되고 위 특별약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구계획을 수행하는 등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사적자율협약과 유사하다(동법 14조). 금융채권자협의회는 해당 약정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추후의 채무재조정 기타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은 물론이다(동법 15조).

4. 소결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적자율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의 워크아웃개시 신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채무

18)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대안, 의안번호 2015682)상 부대의견으로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지원 등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 채무재조정안과 별도로 주채권 은행이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해당 기업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그 경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추후의 채무재조정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실로 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절차라 할 만큼 절차 개시 및 진행, 종결 등 일련의 과정이 채권자의 통제 하에 있으나, 동 절차 내에서 채무자 기업의 지배주주 등은 출자전환에 따른 지배 구조 변경이 없는 한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지속해나가게 된다.

반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주로 채무자 기업이 채무의 변제불능 등의 상황에서 법원에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동 절차 내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재무실사 등을 하는 한편, 현행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따라 통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존 경영자가 위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채무 재조정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동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되는 등 법원의 전면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후 회생절차의 종결 전까지 법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 기업이 해당 계획안에 따른 채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의회 광범위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채권자의 의견 반영은 법원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283조).

기업회생절차를 벗어난 해당 기업은 다시 경영에 완전히 복귀하여 회생계획을 이행하지만 불이행시 일반적인 민사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착수 검토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가장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자 각종 권리감축 등으로 큰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견 제시 등 절차 참여권한 외에 회생계획안 마련이나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해당 절차를 주도하는 권한이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일명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채무자 기업에 대한 통제권 상실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재평가하여 가장 열위의 등급(F)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규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주저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파산으로 이원

19) 2016. 5. 29자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177호)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기업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해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나(채무자회생법 제22조의2, 제39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제87조 제1항, 제6항, 제179조 제2항 신설/개정),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는 아직까지는 신규자금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화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구조조정제도의 역사, 채권자 및 금융당국의 역할,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의 성숙 정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및 현실적 원인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하나, 워크아웃 제도하에서의 채권자의 역할과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 내에서의 채권자의 역할 간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IV.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회생절차 내 채권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1.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그렇다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보완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1978년에 Bankruptcy Reform Act로 제정되어 미국 연방법전 제 11편에 명문화된 연방파산법(United States Code(U.S.C) Title 11 Bankruptcy) 제11장의 회사재건절차(Reorganization)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데²⁰⁾, 위 연방도산법에 따른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무담보채권자 위원회가 구성된다(제1102조 (a)(1)²¹⁾). 미국에서 담보채권자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에 따라 담보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적다²²⁾. 다만 채권자위원회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채권자위원회나 지분증권소

20) 미국 연방 차원의 최초 도산법은 1800년에 제정되었으나, 현행 도산법의 틀은 동 1978년 개정 연방도산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상 최성근·윤영신, “도산절차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1999, 45쪽 참조

21) 최성근, “기업도산절차상 채권자협회의 기능 및 역할”, 「비교사법」 제11권제1호(통권 2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 320쪽; 미국 연방도산법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Section 1102 Creditors' and equity security holders' committees (a)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93),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order for relief under chapter 11 or this title, the United States trustee shall appoint a committee of creditors holding unsecured claims and may appoint additional committees of creditors or of equity security holders as the United States trustee deems appropriate. 참조. 이하 같음.

22) 최성근, 앞의 글, 320쪽 참조

유자위원회 등이 구성될 수도 있다(제1102조 (a)(1)).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연방관리인(U.S. Trustee)이 선임하는데, 통상은 7대 채권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제1102조 (b)). 주목할 점은 갱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임되었으며 위원회가 대표하는 각종 채권자를 대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개시 전 채권자위원회가 개시 후에도 계속하여 연방도산법에 근거한 채권자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제1102조 (b)(1))²³⁾.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는 통상 갱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도산관재인의 선임 없이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채무자(debtor in possession; DIP)로서 사업경영을 계속하면서 재산관리 및 처분권을 갖는데, 이에 상응하여 채권자위원회 역시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감시 및 견제 역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²⁴⁾.

미국 연방도산법상 인정되는 채권자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은 ① 절차의 진행과 사업경영 등에 관하여 도산관재인 또는 DIP와 협의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제1103조 (c)(1)), ② 필요한 조사의 시행(제1103조 (2)), ③ 조사결과 필요에 따라 사업정지, 도산관재인·조사위원의 선임 청구, 파산절차로의 이행 또는 갱생절차의 기각을 청구하는 것(제1103조 (c)(2)(4), 제1104조, 제1108조, 제1112조), ④ 각종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등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제1103조 (c)(5) 및 제1109조(b)), ⑤ 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도산관재인 또는 DIP와 교섭하거나 제출된 계획안의 수락 또는 거절의 투표를 권유하는 것(제1103조 (c)(3)), 또는 채권자위원회가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제1103조 (c)(5)), ⑥ 갱생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심문절차에 출석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진술하는 것이다(제1109조 (b))²⁵⁾.

이 중 계획안의 작성의 경우 계속 점유 채무자(DIP)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절차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조정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는데²⁶⁾, 해당 계획안은 공시가 되어야 하고 채권자와 관리자를 조별로 구분하여 각조의 승인 동의를 얻은 후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된다²⁷⁾. 채권자 또한 계획안의 제출이 가능한

23) 최성근, 앞의 글, 320쪽 참조

24) 최성근, 앞의 글, 320쪽 참조

25) 최성근, 앞의 글, 321쪽 참조

26) 이점인,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 「법이론과 실무」 제17권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87쪽 참조

27) 김성철,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7쪽 참조

데, 이는 i) 도산관재인이 선임되었거나 ii) 채무자가 구제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iii) 채무자가 120일 이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등 권리가 감소된 모든 조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그러하다(1121조 (c)항). 다만, 채권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획안의 강제인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미국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위원회는 상기 권한 등을 부여받아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시와 협상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도 기존 경영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⁸⁾. 채권자 위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은 외부 전문직의 고용 및 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와 비용의 보전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제 1103조 (a), 제503조(b)(2)). 다만, 이는 다시 미국 도산절차의 비용을 상향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²⁹⁾.

3. 독일

독일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4년 도산법(Insolvenzordnung von 5. Oktober 1994; InsO, 이하 ‘독일의 1994년 도산법’이라고 함)에서 대륙법계의 이러한 전통을 깨고 갱생절차를 도입하여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³⁰⁾. 이로써 독일 도산법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을 주면서 해당 기업의 유지 및 면책이라는 목적을 함께 추구하게 된 것이다³¹⁾.

독일의 1994년 도산법은 단일한 도산절차에서 시작하여 갱생이나 회사정리절차 내지 청산절차로 분리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며, 도산절차는 법원에 의해 별도로 선임된 도산관리인의 주도 하에 진행된다³²⁾. 동 도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선임되고 예외적으로 자기관리(Eigenverwaltung)가 인정되지만 이

28) 강민호, 앞의 글, 44쪽 참조

29) Chapter 7 파산절차의 경우이나 파산신청인의 90% 이상이 파산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 역시 절차 비용을 수취하며, 파산신청 후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도산절차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 등에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상 인터넷 자료

www.uscourts.gov/services-forms/fees/bankruptcy-court-miscellaneous-fee-schedule 참조

30) 김성철, 앞의 글, 116쪽 참조

31) 안정상, “도산법상 관리인제도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88쪽, 김성철, 앞의 글, 12-121쪽 참조

32) 김성철, 앞의 글, 116쪽 참조

역시 채권자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제3자 관리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³³⁾. 이와 함께 독일의 1994년 도산법 상 채권자의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 있다.

독일의 1994년 도산법상 채권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결정되는데(제68조 제1항), 도산법원이 제1회 채권자집회 전이라도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위원회를 미리 구성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 위원회는 별채권자, 채권액이 가장 많은 도산채권자, 소액채권자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며 채권자가 아닌 자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제67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도산법원에 의해 채권자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회 채권자집회가 그 위원회의 존치여부 또는 구성원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제6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도산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신청이나 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도 있다³⁴⁾.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도산관재인을 직무수행을 지원, 감독하면서 절차에 직접 참여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장부와 업무서류를 열람하며 금전거래와 잔고를 조사한다(제69조)³⁵⁾. 채권자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다(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은 ① 채권자집회의 위임에 의하여 도산관재인이 도산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협의에 응하는 것(제218조), ② 도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도산계획 제출에 대한 거부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으로 이에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것(제231조), ③ 도산관재인이 도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의 속행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으로 이에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것(제233조), ④ 도산법원의 도산계획 인가결정 전에 심문에 응하는 것(제248조), ⑤ 도산법원으로부터 도산절차의 종결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제258조), ⑥ 도산관재인으로부터 도산계획의 이행상황 기타의 전망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별 정보 및 중간보고를 요구하는 것(제261조), ⑦ 도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받는 것(제262조), ⑧ 자기관리의 감독인으로부터 그 속행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받는 것(제274조), ⑨ 자기관리의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있어서 특히 중요

33) 우세나, “기업회생절차상 관리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관리인의 자격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사법』 제12권제3호(통권 3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9., 467쪽 참조

34) 최성근, “기업도산절차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비교사법』 제11권제1호(통권 2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22- 323쪽 참조

35) 최성근, 앞의 글, 323쪽 참조

한 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것(제276조)이다³⁶⁾.

이 중 특히 도산계획은 채무자와 도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때 채권자위원회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작성, 제출된 도산계획은 채권자의 표결을 거쳐 법원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데,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찬성채권자의 채권총액이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권 총액의 1/2을 초과하여야 승인이 가능하다³⁷⁾.

이들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수행업무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와 비용이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도산법원이 결정하고 이는 절차비용으로 취급된다(제5조 제2호, 제64조 및 제73조)³⁸⁾.

4. 일본

일본은 미국, 독일과 달리 단일법제가 아닌 복수의 도산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산법,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상법상의 회사정리절차 및 특별청산 등 다섯 가지이다³⁹⁾. 이중 파산법과 특별청산은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이고,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및 회사정리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수입 등을 변제자산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갱생형 도산절차이다. 또한 도산절차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파산법과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절차임에 반하여 회사갱생법, 회사정리절차 및 특별청산규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⁴⁰⁾.

일본의 경우 민사재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견제, 감시하는 감독위원이나 기존의 경영자를 대신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⁴¹⁾. 이와 함께 채권자의 의사가 절차진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⁴²⁾.

반면 회사갱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임원은 교체되고 경영권을 상

36) 최성근, 앞의 글, 323-324쪽 참조

37)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Ⅰ) 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31쪽, 35쪽 참조

38) 최성근, 앞의 글, 324쪽 참조

39)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 SOS, 2005, 554쪽.

40)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Ⅴ) 일본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 98-9), 1998, 9쪽 참조

41) 최성근, “기업도산법상 채권자협의회 기능 및 역할”,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통권 2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25쪽 참조

42) 최성근, 앞의 글, 325쪽 참조

실하며 제3자 관리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통제권을 맡게 된다(회사갱생법 제72조)⁴³⁾. 회사갱생절차에서도 민사재생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의사가 절차진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갱생채권자위원회, 갱생담보권자위원회 및 주주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일본 회사갱생법 제117조 내지 제121조).

일본의 민사재생절차 및 회사갱생절차에서 구성되는 채권자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권한은 ① 법원의 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제118조 제2항), ② 법원, 재생채무자 또는 감독위원 등에 대한 의견제출(제118조 제3항), ③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제114조), ④ 법원의 영업등 양도허가에 대한 의견진술(제42조 제2항 단서)이다⁴⁴⁾. 특히 채권자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채권자는 민사재생법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⁴⁵⁾. 또한 채권자위원회는 재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내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기타 관여가 가능한데, 이로 인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채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재생계획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4조 제2항).

일본의 경우 특이할만한 사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적 구조조정이 있는데, 이는 일본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인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한다⁴⁶⁾.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⁴⁷⁾.

5. 영국

영국의 도산법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1986년 전면적 도산법 개정으로 단일의 도산법(Insolvency Act 1986)이 제정되었는데 위 개정을 통해 징벌적인 색채를 많이 제거하고 갱생절차를 도입하기에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자 권리위주의 도산법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⁴⁸⁾.

43) 이점인,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636쪽 참조

44) 최성근, 앞의 글, 326쪽 참조

45) 박승두, 앞의 책, 554-555쪽 참조

46) 강명구·손명혜,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 「산은조사월보」, 2016. 10., 9쪽 참조

47)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로 채무재조정 등 안전이 가결되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2항), 이는 통상의 사적 자율협약에서도 다르지 않다.

48) 윤영신, 「주요국의 도산법(Ⅳ)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13쪽 참조

위 1986년 도산법의 주요 내용은 ①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 “IP”)의 자격을 일정 이상의 자격자로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도산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산절차의 남용 폐단을 방지하였고, ② 관리명령절차와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company voluntary arrangements)에서 갱생 제도를, 담보권자의 담보 행사와 관련된 재산보전관리제도(receivership)를 도입하였다. ③ 도산법의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였고, 1976년 도입된 5년의 자동면책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④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도산상태에 빠뜨린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자격상실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을 제정하여 부적절한 이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⁹⁾.

이 중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는 회사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와 자본구조 및 업무 등을 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⁵⁰⁾. 회사의 청산절차개시를 전후로 회사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데 동 절차에서 회사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도산실무가에게 제출, 도산실무가는 이를 채권자집회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채권자집회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⁵¹⁾. 위 회사채무조정절차에서는 이사가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담보권자나 해당 절차의 통지를 받지 않은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절차 개시 직후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담보권자의 담보 행사와 관련된 재산보전관리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형평법상 구제수단으로 16세기부터 이용되었으며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였는데,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라기보다는 담보권실행절차에 가까웠다. 1986년 도산법 개정으로 위 제도가 도산법에 편입되기에 이르는데⁵²⁾, 통상 채권자에 의해 선임된 재산보전관리인이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매각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서는 영업의 계속 수행 권한까지 부여받아 회사의 갱생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다만 위 절차에서 회사의 청산보다 회사의 계속이 전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재산보전관리인에게 회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49) 김성철, 앞의 글, 97쪽 참조

50) 윤영신, 앞의 책, 16쪽 참조

51) 윤영신, 앞의 책, 16쪽 참조

52) 이상 윤영신, 「주요국의 도산법(Ⅳ)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15-16쪽 참조

재산보전관리제도의 위와 같은 한계를 감안하여 부동담보권자가 있더라도 이와 함께 선택 가능한 별도의 절차로 관리명령절차(administration order)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관리명령절차는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중지시키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Administrator)이 회사의 사업과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거나 갱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을 유리하게 환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차이다⁵³⁾. 위 관리명령절차에서는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데, 이 때문에 청산이나 임의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인정되기도 한다⁵⁴⁾.

위 관리명령절차는 회사 및 경영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도 신청 가능한데, 법원의 결정이 필요 없는 관리명령절차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한 관리명령절차 개시를 위해서도 채권자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⁵⁵⁾. 또한 채권자 신청이 아닌 관리명령 개시신청의 경우 해당 개시신청자는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바로 통지되어야 한다⁵⁶⁾. 관리인의 지위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는 사법관(Officer of the court)으로 분류되어 이들의 업무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관리인에게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⁵⁷⁾.

영국의 도산절차에서는 경우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수는 있으나, 채권자협의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⁵⁸⁾. 그러나 영국의 도산절차 중 회생형 절차의 경우⁵⁹⁾ IP의 주도 하에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집회는 필수적이다⁶⁰⁾.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위와 같은 공식적인 도산절차 외에도 회사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가 인정되어 왔는데, 주

53) 윤영신, 앞의 책, 17쪽 참조

54) 윤영신, 앞의 책, 17쪽 참조

55) 김성철, 앞의 글, 108쪽 참조

56) 김성철, 앞의 글, 107쪽 참조

57) 김성철, 앞의 글, 109쪽 참조

58) 강민호, 앞의 글, 51-52쪽 참조

59) 영국에서 파산형 절차의 경우 공적수탁인(Official Receiver, "OR")이 선임되고, 회생형 절차에 비하여는 법원이 파산결정 등 절차에 일부 개입한다. 이상 강민호, 앞의 글, 51-52쪽 참조

60) 최근 영국의 Insolvency Service(사업, 에너지 및 산업 전략을 담당하는 관청)는 2017. 4. 6. Insolvency Rules 1986 및 그 이후의 개정법률 중 일부를 현대화하였는데, 채권자들에 대한 전자적 송달 방식의 사용, 채권자 집회의 물리적 만남 요건의 폐지,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의사소통 권한 추가, 정식 절차 외 소액 배당의 허용 등이다. 이상, 인터넷 자료

www.gov.uk/government/news/modernised-insolvency-rules-commence-in-april-2017
참조

로 대규모의 회사가 영국은행의 비공식적인 중재 하에 기업회생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 이를 London Approach라고 한다⁶¹⁾. 런던방식은 금융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회생 및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법제화된 점과 차이가 있다⁶²⁾. 또한 회사법 제425조에 따라 회사가 채권자 또는 사원과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화해를 하거나 또는 기타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회사법상의 화해 또는 조정(Compromise or Arrangement)이라고 한다⁶³⁾. 그 밖에도 도산법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채무조정증서(Deed of Agreement)의 작성이 가능한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거나 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를 조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증서이다⁶⁴⁾. 위 채무조정증서에 대하여는 1914년 채무조정증서법(Deeds of Agreement Act, 1914)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이사자격상실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에 따라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상태에 빠뜨린 이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⁶⁵⁾ 이사자격상실이 가능한바, 자격상실명령이 발령되면 최장 15년간 상실되어 추후 회사의 이사, 청산인 또는 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기타 회사의 발기, 설립,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된다⁶⁶⁾(위 법 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 11조, 12조 참조⁶⁷⁾).

61) 윤영신, 앞의 책, 18쪽 참조

62) 강명구손명혜, 앞의 글, 15쪽 참조

63) 윤영신, 앞의 책, 19쪽 참조

64) 윤영신, 앞의 책, 19쪽 참조

65) 1985년 도산법안(Insolvency Bill 1985)에서는 회사가 지급불능이어서 강제청산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사가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침은 부결되고 도산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사자격상실법의 많은 부분은 1985년 도산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David Millan & Chris Durrant, *Corporate Insolvency: Law and Practice* (2d ed. 1994), supra note 3, p.324 (이상, 윤영신, 앞의 책, 92쪽에서 재인용)

66) 윤영신, 「주요국의 도산법(IV)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92-93쪽 참조

67) 이사자격상실법상 이사자격 상실 사유는 크게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실명령 사유(2조, 3조, 4조, 5조, 10조), 법원의 결정에 의하되 반드시 이사자격이 상실되는 사유(6조), 자동적으로 이사자격이 상실되는 사유(11조, 12조)로 대별된다. 이 중 이사의 '부적임(unfit)'으로도 자격상실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6조는 이사들의 적정 업무수행을 압박하는 상당히 위하력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사자격 상실법 6조 (1)항 및 (2)항의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6-(1) 법원은 본 장에 의한 신청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인에게 부적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해당인이 지급능력을 상실한 회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였을 것, (해당인이 이사였거나 그 뒤에 이사가 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또한 그의 이사로서의 행위가 회사

6. 프랑스

프랑스의 도산법제도는 실업방지와 채무자 갱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⁶⁸⁾, 모든 도산절차에서 갱생절차를 우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⁶⁹⁾. 즉,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도산절차 상 선 회생(Redressement Judiciaire)과 후 청산(Liquidation Judiciaire)의 일원적 절차로 진행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예외적으로 직접 청산절차로 갈 수 있다.

프랑스의 도산법은 1984년 3월 1일의 ‘기업의 도산방지 및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방지절차, 1985년 1월 25일의 ‘기업의 사법적 회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및 청산절차, 1985년 1월 25일의 ‘기업의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관리인, 청산인 및 기업진단감정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절차 관계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도산절차 관계인으로는 ‘관리인(Administrateur Judiciaire)’과 ‘청산인(Mandataire Liquidateur)’이 있는데⁷⁰⁾, 전자는 기업회생의 전문가로서 기업회생사건이나 도산방지사건에서 경영의 권한을 가지면서 이를 취급한다. 후자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자

경영에 관하여 그를 부적격하게 만들 것 (그의 행위 단독으로 또는 회사나 관계 회사의 이사로서의 행위와 결합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함. (2) 본 장과 다음 장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지급불능이 되는 것으로 본다. (a) 회사가 그 채무와 다른 책임 및 청산을 위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그 자산이 부족하여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b) 회사에 대하여 관리 명령이 내려지거나, 또는 회사를 위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중략) (4) 본 장에 의한 자격상실의 최저 기간은 2년이고, 최장기간은 15년이다. 이에 대한 해당 법령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court may make a disqualification order against a person in any case where,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it is satisfied - (a) that he is or has been a director of a company which has at any time become insolvent (whether while he was a director or subsequently), and that his conduct as a director of that company (either taken alone or taken together with his conduct as a director of any other company of companies) makes him unfit to be concerned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the next, a company become insolvent if - (a) the company goes into liquidation at a time when its assets are insufficient for the payment of its debts and other liabilities and the expenses of the winding up, (b) an administration order is made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n administrative receiver of the company is appointed; ...(중략) (4) Under this section the minimum period of disqualification is 2 years, and the maximum period is 15 years. 이상 인터넷 자료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6/contents> 참조

68) 프랑스 도산법 제1조에서는 갱생절차의 목적을 ‘기업의 보호, 영업활동과 고용관계의 유지 및 채무의 변제’라고 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산방지절차에 관하여 개별법을 두고 있다.

69) 이상영, “유럽 기업회생법제의 특색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4권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371-372쪽 참조

70)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III) 프랑스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4쪽 참조

를 대리하고 기업의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청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중 특히 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갱생절차의 집행기관으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상근을 요하는 등 수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광범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므로 그 선임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리인 자격자의 명부가 작성되어 비치된다⁷¹⁾.

프랑스에서는 도산사건이 상인인 비전문법관으로 구성되는 상사법원에 의해 감독되고⁷²⁾, 회생절차와 청산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인과 청산인이 모두 법관이 아닌 전문직에 의해 수행되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일부 업무가 위임된다⁷³⁾.

프랑스의 도산절차에서 계속계획은 통상 관리인에 의해 작성되는데, 관리인은 채권자대표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의 감액 또는 변제유예를 승낙하도록 제안한다⁷⁴⁾. 이에 대하여 채권자대표는 채권자들과 협의 후 그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감액 없이 변제유예를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⁷⁵⁾. 이 때문에 프랑스의 도산절차는 채권자의 지위가 열후화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⁷⁶⁾. 그 밖에 갱생절차의 신청권자 중 하나로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갱생절차 내 채권자 대표에게도 채무자 기업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점, 채권 신고 권한 등⁷⁷⁾은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와 유사하다.

또한 프랑스 도산법에서는 법인의 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의 부족이 밝혀진 경우 이러한 자산부족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는 때에는 법률상 및 사실상 경영자 전원 또는 일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⁷⁸⁾(프랑스 도산법 제180조).

그밖에 프랑스 도산법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조기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화해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1984년 3월 1일 ‘기업의 도산방지 및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⁷⁹⁾. 동 절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율적으로 채무재조정 등 협상안을 마련하여 법원이 선임한 조정관(conciliateur)의 조정 하에 상사법원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화해안이 대세적 효력을 갖게 된다⁸⁰⁾.

71) 김성철, 앞의 글, 135쪽 참조

72)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III) 프랑스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3쪽 참조

73) 최성근, 앞의 책, 14쪽 참조

74) 김성철, 앞의 글, 139쪽 참조

75) 김성철, 앞의 글, 140쪽 참조

76) 최성근, 앞의 책, 15쪽 참조

77) 최성근, 앞의 책, 35-43쪽 참조

78)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III) 프랑스의 도산법」, 17쪽 참조

79) 이상영, 앞의 글, 372쪽 참조

80) 김성철, 앞의 글, 141-142쪽 참조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해 보면, 계속 점유 채무자(DIP) 제도를 채택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도 채권자협의회가 아닌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산절차의 진행과 사업경영 등 전반을 도산관재인 또는 DIP와 협의하고,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갱생절차의 지속이나 도산관재인의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고, 계획안의 작성에 관해서도 직접 DIP와 교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친화적인 도산절차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에도 도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선임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기관리의 경우라도 채권자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제3자 관리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은 도산관재인의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장부와 업무서류를 열람하며 금전거래와 잔고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도산관재인의 도산계획 작성시 협의에 응하고 도산계획의 이행상황까지 점검하는 등 절차 관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에도 채권자위원회 제도를 두어 채권자의 절차 진행 관련 참여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이거나 채권자에게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민사재생법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민사재생절차와 달리 회사갱생절차에서는 아직도 제3자 관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채권자위원회는 재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내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기타 관여가 가능하다.

한편, 채권자 친화적인 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특히 도산실무가의 자격을 일정 이상의 자격자로 한정하여 도산절차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도산상태에 빠뜨린 이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법으로 이사자격상실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까지 마련하였다. 특히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명령절차(administration order)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Administrator)이 해당 갱생절차를 진행하고, 영국의 1986년 도산법으로 도입된 임의적 회사채무조정절차에서도 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대신 담보권자나 해당 절차의 통지를 받지 않은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도산절차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제3자인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선임되어 도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계획 등을 작성한다. 해당 계속계획 등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법원에

의해 채무의 변제유예가 강제될 수 있는 점은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한 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도산절차에서의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듯하다.

구조조정제도와 그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채권자의 역할은 각 나라의 구조조정 역사 및 운용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 채무재조정안의 제출 및 조정안의 이행 점검 등 핵심적인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각종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되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회의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V.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향

1.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역할 강화의 필요성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와의 균형 관점

위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협회의 기능과 권한은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도산절차 내에서 선임되는 관리인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일 경우 법원 및 관리위원회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 기능이 더욱 강하게 요청됨은 물론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채권자협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있어야 법원 등의 관리감독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면제 등 채권자의 권리감축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¹⁾. 이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 선임되는 관리인이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채권자의 역할에 대하여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현행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를 전제로 법원에서도 기업회생절

81) 현재 도산절차에서의 대심주의(Adversary System)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산절차가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비송절차로 보더라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각자의 주장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및 개별 이슈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상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12., 75쪽 참조

차 진행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일정 금액 이하의 동산 등 처분이나 영업활동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채무자 기업의 자산부채 평가 등을 위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제3자 조사위원을 대부분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⁸²⁾. 그러나 채권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각종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2) 워크아웃 제도와의 비교 관점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을 반복하며 한시법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는 위 3.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 절차 내에서 채권자의 지위와 역할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절차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기는 하나 제도적 통합을 위해서는 양자 간 채권자의 역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며,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선임권 및 해임권, 회생계획안 제출권한의 필수적인 부여, 회생계획 이행 감독 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대로 워크아웃에서도 채권자 주도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채무자의 권리 보장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즉,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의 신청권한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부여하고(위 운영협약 16조 2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5조 2항),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채무자 기업에게 이의권한을 부여하며(기업구조조정촉진법 6조1항),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14조 2항,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채무자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30조).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채무자 기업이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 요청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종결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11조 5항, 19조 5호).

다만, 워크아웃 절차는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금융채권자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자 및 해외채권자 등을 아우르는 절차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절차에 비하여 채권자의 범위도 넓고 주주, 조세채권자의 이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채권자의 권한 강화시 이에 대응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권한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82) 강민호, 앞의 글, 27쪽 참조

임은 물론이다⁸³⁾. 또한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채권자의 권한 행사시 상대적으로 다액인 금융채권자 뿐만 아니라 소액 다수의 상거래채권자의 의견취합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도산절차의 참여자 간 역할 재배분의 관점

상술한 바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 유예 및 채무 일부 면제/출자전환 등을 통해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유인이 없거나 참여하려고 하여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⁸⁴⁾, 이 때문에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참여에 소극적이다.

도산절차 그 중에서도 특히 채무재조정안 마련을 통해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을 모색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게 관리인 및 조사위원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권한의 필수적인 부여 등을 통해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구경꾼이 아닌 주요 당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산절차에서의 대심구조 강화 논의도 실상 판사를 정점으로 하는 도산절차에서 제반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⁸⁵⁾ 및 각종 이익충돌 상황에서 채무자 기업과 상반되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해 보자는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4) 주요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 절차와의 비교 관점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주로 회생 또는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채권자에게 관리인 선임 등을 비롯한 주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보다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한 바와 같다.

다만,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통해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은 현행법상으로도 실현할 수 있

83) 미국의 경우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응하여 도산절차에서 적용되는 연방 도산절차법(The 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이 제정되어, 도산절차 내에서의 각종 신청(Claim)의 제기, 각종 명령(order)에 대한 이의제기(challenging) 등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2019 Edition)』, Michigan Legal Publishing Ltd., 2019, 참조

84)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09. 12. 16., 39쪽 참조

85)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앞의 글, 36쪽 참조

는 채권자협회의 권한 실질화를 먼저 논한 뒤, 불가피하게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회의 개선방향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보완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 등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 기타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며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채권자협회의 의견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만큼(채무자회생법 21조 1항 2호, 74조 2항 2호), 법원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는 기회가 보장됨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외부 산업환경의 변화 등이 아닌 기존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 관리인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75조 참조).

다만 제3자 관리인 선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역량 있는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이나 적정후보군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 외 채무자 기업의 실무 책임자, M&A를 추진하는 회생기업의 경우 M&A 관련 업무 유경험자, 유사 업종 재직자로서 업계 내 업력을 인정받은 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⁶⁾.

(2) 회생계획안 마련시 채권자협회의 의견 반영 강화 등

채권자는 채무재조정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예, 출자전환 등 권리감축을 당하는데, 이러한 채권자의 입장이 회생계획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채권자협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채무자회생법 17조 1항 3호, 220조 및 221조 참조).

특히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전 단계로 조사위원이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사를

86)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편 제2장 법인회생 제211호 관리인 등의 선임, 해임, 감독 기준 26쪽 참조

진행하는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무재조정 등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실사 단계에서부터 채권자협의회에 관련 자료가 상시 제공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87조 3항 참조).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이고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채권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채무자회생법 17조 1항 1호 및 2호 참조). 채무자 기업의 실사결과에 대한 채권자협회의 상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워크아웃 절차에서와 같이 채권자협회와 기존 경영자 관리인 간 자금관리위원 파견약정을 체결하여 동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기업의 자금집행을 감시하고 협의회에 보고하는 방안⁸⁷⁾ 및 현행 채권자협회를 위한 외부 전문가 선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참조).

(3)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등

한편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기업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114조, 115조), 기업회생절차 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견제책으로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게 기존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신청권자에 채권자협회 내지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사자격상실법에 따른 이사자격상실 명령 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법원의 명령으로 이사자격이 상실되면 최장 15년간 회사의 이사, 청산인 또는 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기타 회사의 발기, 설립,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위하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4)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의 절차 내 채권자 의견의 반영 강화 등

회생절차 종결시 채무자 기업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채권자협회의 의견 반영을 실질화하여야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3조 6호 참조). 통상 회생절차 종결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87) 김주학,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개선방안”, 201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8, 3, 67-68쪽 참조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채무자회생법 283조), 이 때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3조 6호).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이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바, 인가된 회생계획의 향후 이행가능성 등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채권자들의 협의체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반영됨이 마땅하다.

또한 회생계획안 인가 후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 앞 그 이행가능성 관련 정보의 상시 제공 의무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후속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채무자회생법 21조 1항 4호 참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 기업은 일응 다시 정상기업으로 되돌아가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바, 그 이행가능성을 점검하고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회의 회와 유사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⁸⁸⁾ 이를 통해 회생 종결 이후라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2차, 3차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도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만족, 채권자 간 평등변제뿐만 아니라 채무자 기업의 갱생 및 이를 통한 사회전체적 효용의 증가라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⁸⁹⁾. 비교법적으로도 위와 같은 다양한 목적 중 어느 것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도산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선임 방법, 관리인과 법원의 역할,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협의회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업회생 또는 파산에 들어선 채무자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지배주주의 채무자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전무하고 오히려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됨이 정당할 것인바⁹⁰⁾,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불가피한 사회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를 견제하는 채권자의 역할 강화는 기업회생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이는 도산절차의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전체적 효용의 관점에서 채무자 기업의 존속을 통해 기업 가치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분배를 꾀하는 것임을

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3판)」, 박영사, 2011, 229쪽 참조

89) 이원삼,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한국학술정보, 2006. 12. 30, 30-31쪽 참조

90) 안정상, 앞의 글, 32쪽 참조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우리의 도산법제는 정부주도의 산업발전 및 부실기업의 처리라는 특수한 배경하에 회생, 파산절차 외에 정부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제도가 병존해 왔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다수채권자의 결의에 의한 구조조정절차를 인정한 데에 대하여 끊임없는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아직 존치하는 현실에서 우리 채무자회생법으로의 통합 또는 동법의 기업회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역할과의 비교 검토, 주요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내 채권자의 역할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다시 고찰해보고 그 개선방향을 찾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본고에서도 위와 같은 비교 검토를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채택에 상응하여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만들어졌으나 관리인과의 힘의 균형 문제, 또 다른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에서의 채권자의 역할 및 주요 선진국 법제와 비교할 때 채권자의 지위가 상당히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운용의 변화 및 일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바, 우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상응하여 채권자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의견 반영의 실질화, 공동관리인 선임의 적극적 활용, 회생계획안 마련시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반영 강화 및 이를 위한 실사결과와 채권자 앞 의무적 제공,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의 활성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의 절차 내 채권자 의견의 반영 강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 권한 부여, 채권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 의무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행가능성 점검 권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가급적이면 현행 제도하에서 쉽게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채권자와 채무자 간 역학관계 측면에서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존치하자면 현행 채권자협의회 의견제시 권한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의 역할 강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채무자 기업의 갱생가능성을 재고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워크아웃제도와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제도의 통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명구·손명혜,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 「산은조사월보」, 2016. 10.
-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436호), 2005. 2차
- 국회 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대안, 의안번호 의안번호 15682), 2018. 9차
- 김성철,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장훈,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 기업회생사건의 최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6권제2호, 한국법학원, 2015.
- 김재형, “도산법제의 재검토 -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50권제2호, 법조협회, 2001.
- 김주학,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개선방안”, 201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8. 3.
-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 SOS, 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3판)」, 박영사, 2011.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19. 3. 25자 개정본
- 안정상,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우세나, “기업회생절차상 관리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관리인의 자격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사법」 제12권제3호(통권 3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9.
- 유해용,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 윤영신, 「주요국의 도산법(IV)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 이상영, “유럽 기업회생법제의 특색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4권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이원삼,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한국학술정보, 20016. 12. 30
- 이점인,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이점인,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 「법이론과 실무」 제17권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09. 12. 16.
-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법」 제18호, 사법발전재단, 2011. 12.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4차 개정안(2018. 10.5자)
- 최성근, “기업도산절차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비교사법」 제11권제1호(통권 2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
-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I) 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III) 프랑스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최성근, 「주요국의 도산법(V) 일본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 98-9), 1998.

최성근·윤영신, “도산절차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II. 외국문헌

「*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2019 Edition)*」, Michigan Legal Publishing Ltd., 2019.

David Millan & Chris Durrant, 「*Corporate Insolvency : Law and Practice (2d ed)*」, 1994.

https://en.wikipedia.org/wiki/Bankruptcy_Reform_Act_of_1978

https://en.wikipedia.org/wiki/Insolvency_Act_1986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dernised-insolvency-rules-commence-in-april-201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6/contents>

<https://www.usbankruptcycode.org/chapter-11-reorganization>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fees/bankruptcy-court-miscellaneous-fee-schedule>

논문 투고일: 2019. 04. 05

심사 완료일: 2019. 05. 31

계재 확정일: 2019. 06. 11

[Abstrac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System

Inwon Kang*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djusting and coordinating multiple interests of person concerned in this procedure including creditors, shareholders etc. against debtor in financial distress.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insolvency procedure has many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habilitation of debtor, satisfaction of creditors and fair treatment of creditors. Especially, creditors' rights are heavily limited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so creditors' involvement in this procedure is one of the major task in order to assign justification over limitation of creditors' rights.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a system called as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excep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whereby creditors have several rights, however rehabilitation procedure is yet deemed to be unfavorable to creditors in the name of 'court receivership'. Especially historically in our country, there is Work-Out procedure as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through Creditor Bank's Voluntary Operating Committee or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nd those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is recognized as much more favorable to creditors rather than rehabilitation procedure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erms of creditors' rights and functions.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dopted Debtor in Possession in order to activ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however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is less revitalized in full due to of complex causes such as matter of rehabilitation system itself and operational matters etc.

Comparing our rehabilitation procedures with U.S., Germany, Japan, England and France, there are several shortfalls in our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in terms of the balance of power with Custodian. So, I hereby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 such as full consideration of creditor's opinion over appointment and/or dismissal of Custodian, third party co-custodian appointment, full consideration of creditor's opinion over draft rehabilitation plan, Right to seek damages etc against any custodian of debtor responsible to debtor corporation, forming a consultative committee for monitoring of ability to carry out rehabilitation plan.

Through the above suggestion, the current rehabilitation procedure would be activated and the 'out of court restructuring system' would be combined to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end.

Key Words: rehabilitation,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Custodian, Work-ou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solvency act

* Senior Loan Officer/Inhouse Legal Counsel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